

□ 변경 대비표

변경시행일 : 2013년 2월 27일

신한BNPPBEST법인용MMFGS-1호

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- (1) 기재사항 변경
 - 1 종류 C-P 수익증권 가입자격 기재 정정
 - 2 최근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
 - 3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
 - 4 공시서식개정에 따른 변경
 - 5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종류 C-P 수익증권 가입자격 기재 정정: 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A-u2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종류 C-P 수익증권: - 투자자격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전용 수익증권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A-u2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종류 C-P 수익증권: - 투자자격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자금
1. 종류 C-P 수익증권 가입자격 기재 정정: 제2부 11. 매입 및 환매 기준	제2부 11. 매입 및 환매 기준 가. 매입 및 다. 환매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A-u2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종류 C-P 수익증권: - 투자자격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전용 수익증권	제2부 11. 매입 및 환매 기준 가. 매입 및 다. 환매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A-u2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종류 C-P 수익증권: - 투자자격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자금
1. 종류 C-P 수익증권 가입자격 기재 정정: 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A-u2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종류 C-P 수익증권: - 투자자격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전용 수익증권	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A-u2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종류 C-P 수익증권: - 투자자격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자금
2. 최근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: 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직전회계연도)
2. 최근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: 제3부 1. 재무정보,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,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3부 1. 재무정보,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,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3부 1. 재무정보,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,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직전 회계연도 및 2013년 1월 31일)
3.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: 제2부 5.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	제2부 5.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	제2부 5.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2013년 1월 31일)
3.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: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 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2013년 1월 31일)
4. 공시서식개정에 따른 변경: 제2부 5.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	제2부 5.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	제2부 5.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개정된 공시서식에 따라 작성(주요 내용에는 변경 없음)

<p>5.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: 제2부 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</p>	<p>제2부 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3)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- 개인 15.4%(주민세포함), 일반법인 14%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.4% (소득세 14%, 주민세 1.4%)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(이자, 배당소득)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, 연간 금융소득(이자, 배당소득)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.</p>	<p>제2부 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3)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- 개인 15.4%(주민세포함), 일반 법인 14%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.4% (소득세 14%, 주민세 1.4%)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(이자, 배당소득)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, 연간 금융소득(이자, 배당소득)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.</p>
--	---	--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- (1) 기재사항 변경
 - 1 종류 C-P 수익증권 가입자격 기재 정정
 - 2 최근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
 - 3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
 - 4 공시서식개정에 따른 변경

항목	정정전	정정후
<p>1. 종류 C-P 수익증권 가입자격 기재 정정: 제3부 1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	<p>제2부 1. 보수 및 수수료 가.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A-u2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종류 C-P 수익증권: - 투자자격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전용 수익증권</p>	<p>제2부 1. 보수 및 수수료 가.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A-u2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종류 C-P 수익증권: - 투자자격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자금</p>
<p>2. 최근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: 제1부 6. 투자실적 추이[연도별 수익률]</p>	<p>제1부 6. 투자실적 추이[연도별 수익률]</p>	<p>제1부 6. 투자실적 추이[연도별 수익률] 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2013년 1월 31일)</p>
<p>2. 최근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: 제2부 1. 보수 및 수수료</p>	<p>제2부 1. 보수 및 수수료 다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	<p>제2부 1. 보수 및 수수료 다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최근현황갱신 (직전 회계연도 기준)</p>
<p>2. 최근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: 제3부 요약 재무정보</p>	<p>제3부 요약 재무정보</p>	<p>제3부 요약 재무정보 최근현황갱신 (직전 회계연도 기준)</p>
<p>3.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: 제2부 5.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</p>	<p>제2부 6.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</p>	<p>제2부 6.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2013년 1월 31일)</p>

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

- (1) 기재사항 변경
 - 1 종류 C-P 수익증권 가입자격 기재 정정

항목	정정전	정정후
<p>1. 종류 C-P 수익증권 가입자격 기재 정정: 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</p>	<p>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 ~ ② <생략>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A-u2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종류 C-P 수익증권: - 투자자격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전용 수익증권</p>	<p>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 ~ ② <현행과 같음>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A-u2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종류 C-P 수익증권: - 투자자격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자금</p>